

[]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
[] 애플리케이션식
[] 제작 [] 수리 [] 사용

1. 명칭(업종):
2. 성명(대표자):
3. 주소(주사무소 소재지):
4. 검정기관 소재지:

위 사람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
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
· 특별자치도지사

직인